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1,544,262	17,446,328
일반회계	503,414,590	15,102,438
특별회계	78,129,672	2,343,890
공기업특별회계	48,671,937	1,460,15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952,135	448,564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719,802	1,011,594
기타특별회계	29,457,735	883,73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6,004	90,18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387,378	41,621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7,192,567	515,777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89,488	5,68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23,965	15,719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96,126	5,884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854,229	25,62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974,556	59,237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01,167	33,035
농기계순회수리사업특별회계	40,753	1,223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1,662	350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2,054,423	61,633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25,417	27,76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36,97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